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| | |
|--------|---------|
| 선 람 | 기 관 의 장 |
| | |

제511호 2017. 7. 20.(목)

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2017-128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
사항 고시 ----- 2
- 사천시 고시 제2017-130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 ----- 3

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 람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7 / FAX 831-6012

사 천 시 공 보

제511호(2)

고 시

사천시 고시 제 2017 - 128호

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7. 7. 17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(승인일자) : 제2017-1호(2017. 4. 27.)
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(공사완료신고서)를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 -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3. 공사 내용
 - PE부잔교 및 연결도교 설치
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 -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14-9번지선 공유수면
5.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
 - 2017. 07. 14.

사 천 시 공 보

제511호(3)

고 시

사천시 고시 제2017 - 130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7. 7. 17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 : 제2017 - 3호
2. 점용·사용 승인 연월일 : 2017년 7월 17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
 - 송포마을권역 종합정비 사업으로 수산자원조성 등 어촌체험장 조성
4. 점용·사용의 장소
 - 경남 사천시 대방동 759번지선 공유수면
5. 점용·사용의 면적 : 2,519.2㎡(직접 1,780, 간접 739.2)
6. 점용·사용의 기간 : 2017. 7. 17. ~ 2032. 7. 16.(15년)
7. 점용·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성 명 : 사천시장(지역개발과장)
 -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